

(사)IBS Korea 정 관

2002. 4. 3 인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758호)
2002. 6. 26 등기 (서울지방법원 제 1617호)
2006. 1. 10 개정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155호)
2009. 2. 26 개정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1319호)
2014. 5. 7 개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2293호)
2015. 3. 17 개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125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IBS Korea(Intelligent Building Society of Korea)”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지능형빌딩(Intelligent Building, “IB”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하여 공공·민간부문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IB에 관한 각종 연구, 정책자문 및 사업활동을 통하여 IB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위치)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가의 IB 정책·기술자문 및 위탁업무 수행
2.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사업 지원
3. 국가 IB 아키텍처 정립 및 표준화 지원
4. 국제협력 촉진
5. IB의 정보센터 역할 수행
6. 연구발표회 및 기술전시회 개최
7. IB 사업의 장려 및 대 국민 홍보
8.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9. IBS 교육 및 자격검정
10. IBS 전문업체 등록

11. IBS T&C (Test& Commissioning)

12. 평생교육시설운영

13.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제 규정) 본회는 이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 외에 업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으며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IB관련 업종에 종사 또는 이에 관심이 있는 자.
2. 준회원 : 준회원은 IB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인 자.
3.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 회의 사업취지를 찬동하는 법인 및 단체.
4.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5. 평생회원 : IB관련 업종에 종사 또는 이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제7조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사업 및 기술적·학술적 회합에 참가
2. 본회에서 수집, 작성한 자료 및 정보의 이용
3. 본회의 평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본회의 총회에서 의결권

제8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일반회비는 입회비, 연회비로 구분하며, 각종 회비의 금액결정 및 회비의 집행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2. 특별회비는 본회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9조 (탈퇴 및 징계)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의무를

완료한 후에 회원 사퇴서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또 회원이 본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제명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제10조 (명예회장 및 고문) 본회의 발전을 위해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 : 명예회장은 본회의 회장 임기를 마친 분으로 회장 자문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다.
2. 고문 : 본회의 부회장 역할을 마친 분으로 회장의 요청에 의해 선임된 분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회는 기구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10인 이내
3. 이 사 : 50인 내외(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 2인

제12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본 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연임, 연장이 가능하다.
2. 결원 발생으로 보선을 요할 시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3.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 제12조의 각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선출된다.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가 인준하여 선임된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의 승인
2. 임원의 인준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6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소집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정기총회는 매년 회기 말 전후 60일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결한다.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 또는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 동 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2. 총회에 출석치 못하고 총회 개최 전에 권리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한 회원의 경우에는 이를 출석인원으로 간주한다.
3.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본회와 의장 또는 회원간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나.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18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회장단의 추천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및 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 (의결 정족수) 의결 정족수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이사회 의결안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소집한다.

1. 회장은 격월로 1 회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21조 (위원회)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구성한다.

1. 본회 내에 다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가. 정책자문위원회
 - 나. 위원회
 - 다. 연구회

- 라. 회장자문위원회
- 2.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회 및 연구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위원회의 설치, 조직, 운영, 폐지 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 4. 필요한 경우에 해당 분야에 관한 임시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5. 회장자문위원회는 본회 회장을 역임한 명예회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지능형건축물에 관련된 정책 및 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장 자문 역할을 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22조 (사무국)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 1. 본회에는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2. 사무국장과 유급직원의 급여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4. 사무국의 운영과 직원의 복무 및 사무처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재 산 및 회 계

제23조 (자산) ① 본회의 자산은 다음에 기록하는 자산으로 한다.

-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자산
 - 2.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
 - 3. 기부금 및 보조금
 - 4. 사업에 따르는 수입
 - 5.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 6. 기타 수입
- ② 본회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합이 3억원 이상 되어야 한다.

제24조 (자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하고 그 방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 (예산) 회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매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결산) 회장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
아야 한다.

제28조 (기부 및 보조금) 회장은 기부금과 보조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접수
한다.

제 9 장 정관개정과 해산

제29조 (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은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30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
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본 회와 유사한 법인에 기증된다.

제 10 장 보 칙

제32조 (운영규칙) 본회 정관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33조 (시행)

1.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본회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
한다.
2.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초대 임원선출) 초대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설립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초대임원의 임기는 2003년 12월 까지로 한다.

부 칙(2006. 1. 10)

1. 본 개정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1)

1. 본 개정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1)

1. 본 개정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1)

1. 본 개정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